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업무협약서

접수번호 : 2026-N-00285

□ 협약기간 : 2026. 1. 1. ~ 2027. 3. 30.

□ 총 사업비 98,400,000원

- (직접사업비) 96,000,000원 / (운영비) 2,400,000원

직접 사업비	- 주관기관 출연금	48,000,000 원	
	상생형 일반	(직접사업비_현금) 48,000,000원	(현물) 0원
	상생형 시트랙	(직접사업비_현금) 해당없음원	(현물) 해당없음원
	- 정부지원금	48,000,000 원	
	상생형 일반	(직접사업비) 48,000,000원	
	상생형 시트랙	(직접사업비) 해당없음원	
운영비		(운영비) 2,400,000원	

□ 협약당사자

추진기관의 장 : (기관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표자) 김영신
(이하)'추진기관'이라 한다

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

협업기관의 장 : (기관명) 한국생산성본부 (대표자) 박성중
(이하)'협업기관'이라 한다

재원관리기관의 장 : (기관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자) 변태섭
(이하)'재원관리기관'이라 한다

상기 협약당사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수행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 시 추진기관의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협약서는 주관기관과 협업기관, 자원관리기관(이하 “협약대상”)이 참여하는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 (기관별 역할)

1. 본 협약에 따라 "추진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 활동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등
- ② 협약대상의 모집·선정
- ③ 사업 예산의 배정(정부지원금 해당 분)·집행 및 정산 등
- ④ 협약대상의 사업운영 관련 관리·감독 및 점검 등

2. 본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원금 출연(주관기관 해당분) 및 중소·중견기업(이하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총괄

② 도입기업 추천·선정 및 전문인력 지원(주관기관의 지원 기준에 따라 필요시 실시)

③ 기타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필요한 활동 등

3. 본 협약에 따라 "협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도입기업 발굴·모집 및 홍보 지원
- ② 도입기업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원가계산 진행
- ③ 도입기업의 선정 및 점검(현장, 중간, 최종), 결과의 평가 등
- ④ 정부·주관기관 지원금(이하“사업비”)의 위탁운영 및 집행 등
- ⑤ 기타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등

4. 본 협약에 따라 "자원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주관기관 발굴 및 홍보 지원 등
- ② 사업비 관리·교부 및 정산·반납 등
- ③ 스마트공장 운영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 등

제5조 (사업의 수행)

1. 협약대상은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 및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이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사업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협약대상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이하 “세부지침”)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추진기관은 협약대상에게 지원 단계별 기준에 근거하여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2. 운영비는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에서 협업기관 4%, 자원관리기관

1%를 운영비로 각각 책정한다. 단, 협업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협업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

3. 협약대상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세부지침 제20조에 따라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추진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생형 일반 및 SI트랙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협약대상은 직접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출연금)를 각 트랙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트랙 간 직접사업비는 이동할 수 없다.

5. 협약대상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약일 이전에 추진한 도입기업 수요조사 및 발굴·기획 등의 업무도 본 협약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본다. 이 경우 소요된 경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의무사항 이행)

1. 협약대상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세부지침 및 세부기준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협약대상은 협약기간 및 구축지원 과제의 정산의 종료 이후, 추진기관이 지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완료보고서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대상의 장은 세부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점검·평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진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점검·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4. 본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로 세부기준 및 지침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8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상호간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협약대상은 사업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매년 추진기관이 주관하는 추적성과 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 제공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1. 추진기관(또는 자원관리기관)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협약대상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약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추진기관(또는 자원관리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협약대상에게 통보하고, 협약대상의 장은 사업비 정산잔액을 추진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협약당사자들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의무의 양도금지)

각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1. 협약당사자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스마트제조혁신고시”), 세부 지침 및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추진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으로써 제9조에 따른 협약 변경 절차에 같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당사자 간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스마트제조혁신법, 스마트제조혁신고시, 세부지침·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하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 간의 상호협의하에 정한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가 각 1부씩 작성하고 상호 간 서명·날인하여 보관하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6년 08월 05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표자	김영신	(인)
-------------	-----	-----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인)
--------	-----	-----	-----

한국생산성본부	대표자	박성중	(인)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자	변태섭	(인)
--------------	-----	-----	-----